

(가칭)점단 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(입안) 취소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645호(2013.5.31.)호로 「도시개발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(가칭)점단 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(입안)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를 공고합니다.

2015. 5. 20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

- 가. 구역명칭 : (가칭)점단 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
- 나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93 번지 일원
- 다. 면 적 : 995,781m²
- 라. 관계도면 : 게재생략

2. 도시개발구역 지정(입안) 취소 내역

- 가. 취소면적 : 995,781m²
- 나. 취소사유 : 도시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
- 다.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 : 공고일로부터 제한 없음
- 라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상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: 해당 없음

3. 관계도면 열람방법 : 도시개발구역 지정(입안) 취소 공고 관계도면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

-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나. 공람장소 :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(☎ 032-440-4692, 4686)
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개발과 (☎ 032-560-4782~4)

